

- 200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
현 지 확 인 결 과

▣ 확 인 개 요

- 0 주 관 : 평창군의회
- 0 기 간 : 2004.5.19 ~ 5.24(4일간)
- 0 대상사업 : 수해복구 및 군정 주요투자사업장 38개소
- 0 확 인 반 : 1개반 8명
 - 반 장 : 우강호 의장
 - 반 원 : 신교선 부의장, 이만재의원, 차재천의원, 고응종의원
이수현의원, 심재국의원, 김영해의원

- 사무보조 : 박태영, 최원규, 최순철, 이현연

- 0 주요내용
 - 2004년 주요투자사업중
 - 여론화사업, 고액투자사업, 각종 시책사업등
 - 200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이행실태
 - 기타 수해복구사업장

▣ 확 인 결 과

가. 사업장 현지확인 및 지적사항

구 분 읍·면	대상사업장	확인사업장	지적사항	건의사항	확인일자
계	38	38	6	7	
평 창	4	4		1	5.24
미 탄	5	5	3		5.24
방 립	4	4	1	1	5.20
대 화	4	4	1	1	5.20
봉 평	4	4		1	5.21
용 평	2	2		1	5.21
진 부	8	8		1	5.19
도 압	7	7	1	1	5.19

지 적 사 항

환경복지과 1건

□ 사업명 : 쓰레기 매립장 운영현황 및 차기매립장 추진현황 〈차기쓰레기 매립장 추진사업과 관련 종합적인 대책마련〉

- 차기 미탄면 쓰레기 매립장사업은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는 상태로 행정소송 패소 시를 대비한 대책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집행부는 아무런 대안 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상태임.
차후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각종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2005년도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할 주민반발과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임업경영과 1건

□ 사업명 : 유천2리 석산개발사업 〈주민집단민원 해소차원에서 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 요구〉

- 도암면 유천2리 석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소음·분진등의 환경피해를 우려한 주변 주민들의(유천1리·3리, 용산1리) 집단민원이 제기된 바,
군은 민원 답변시 향후 주민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한다고 답변하였으나 행정심판 재결후 허가단계등 지금까지 주민들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행정과 주민간의 불화만 가중되어 사업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는 양상이 있음.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과의 협의가 어려운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바라며 이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마련을 강구하기 바람.

건설과 3건

□ 사업명 : 창리 ~ 평안간 무공해 반출도로공사(건설과)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국비지원금 확보 노력 미흡〉

-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추진중인 「창리~평안간 무공해 반출도로 공사」 예산확보와 사업공정율을 살펴보면 총공사비 31억중 2004년도 예산액 5억을 포함한 확보액은 극히 미진한 상태로 공정을 또한 예산부족, 토지보상 미해결로 36%에 그치고 있음.

또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지않는 구간에 대한 사전 도로파손으로 주민안전 사고가 발생하는등 사업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끊이지 않고있는 상태임. 따라서 국비 미확보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중적인 예산투자를 통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사업명 : 창리(뒷별) 반기반 정비사업(건설과)

〈사용불가능한 농업용 암반관정 신속 복구〉

- 창리에 설치된 암반관정 4개중 1개가 사용불가능하고 군 전체적으로 볼 때 농업용 암반관정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설치후 지속적인 관리부족으로 인한 누수로 인하여 사용량에 비해 전기료가 과다하게 나오게 됨에 따라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부서에서는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통하여 미사용관정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사업명 : 전반적인 건설공사시 발생하는 민원해결 미흡(건설과)

-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회사의 성의없는 민원해결태도로 인하여 주민불만·분쟁의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도 민원문제 해결을 시공회사에만 맡기고 감독부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비일비재함.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하면 감독부서가 직접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바람.

방림면 1건

□ 사업명 : 계촌5리 소교량 수해복구사업

〈수해방지를 위한 진입로 개선 및 날개벽 추가시공〉

- 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은 교량끝 날개벽 부분에 대하여 수해시 하천범람의 우려가 있어 설계변경을 통한 날개벽을 설치하고 이시설물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실태조사로 통하여 재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시공등 피해방지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건의사항

문화관광과 1건

□ 사업명 : 진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체육공원에 반드시 필요한 조경코스, 화장실 등 추가설치〉

- 진부체육공원조성사업에 있어 체육공원에 꼭 필요한 조경코스가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체육공원으로써 제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고 화장실 또한, 넓은 면적에 비해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어 사용 시 주민들의 불편이 확실히 되는 바, 주민욕구 충족과 편의를 위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기 식수된 조경수가 외관상 조경수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바 지역의 특성과 체육공원의 이미지에 맞는 조경수로 교체해 줄 것을 바라며
체육기구 또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엔 종류와 수량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체육기구를 더 설치해줄 것과 준공예정일이 얼마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 조속히 보완하기 바람.

환경복지과 1건

□ 사업명 : 계촌복지회관(피로연장)신축사업

〈부족예산 조속 확보 및 공기내 준공〉

- 계촌복지회관(피로연장)신축사업 준공예정일이 2004년 12월인 점을 감안할때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공사기간에 쫓겨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바라며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요구사항인 1,2층 화장실 및 2층 음식 승강장설치에 따른 예산확보가 1회추경에 반영되지 않아 차후 2회추경에는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사용시 불편함이 없는 시설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임업경영과 2건

□ 사업명 : 신2리 광산허가

〈원상복구를 전제로한 허가 및 목적외 사용 방지철폐〉

- 대화면 신2리 광산허가에 있어 사전협의를 통하여 사업기간종료후 원상복구 및 연장 신청에 있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행정처리를 바라며 규석채취외에 타 광물(골재)이 유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철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반대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피해저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주민과 행정과의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바람.

□ 사업명 : 면은리 산355번지 펜션허가사업

〈무분별한 펜션난립 사전방지〉

- 면은리 산355번지 펜션허가사업은 200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 불법토석채취 및 산림무단훼손 등으로 지적되었던 사업장으로써 무단산림훼손에 대하여는 단속되었지만 불법토석채취 부분에 대하여는 단속하지 않은 실정임. 향후 단속에 차등을 두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다 할지라도 주변상황을 파악하여 불허할 수 있는 부분은 불허하여 무분별한 펜션난립으로 인한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바람.

지역도시과 2건

□ 사업명 : 노동리 마을하수도 및 기반시설공사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를 위한 친환경적 공간 마련〉

- 용평면 노동리에 설치되는 오수처리장이 기존 혐오시설이라는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공간(잔디공원, 꽃가꾸기, 쉼터등)을

조성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향후 오수처리량의 증가로 인해 처리시설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처리장부지 미확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기간 내에 준공될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사업명 : 소도읍육성 지원사업**

〈향동리 진입도로 공사구간 소교량 해결〉

- 평창읍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향동리 진입로 확장사업 추진에 있어 시공구간 끝나는 부분에 협소한 소교량이 위치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심한 선형굴곡과 협소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교량 설계반영을 검토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주민통행과 농산물반출차량등 소통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도암면 1건

□ **사업명 : 용산1리 수해복구사업**

〈미비점(개비온) 추가시공〉

- 도암면 용산1리 수해복구공사 구간중 상류부분 60M 구간에 개비온이 설치되지 않아 금년도 복구를 한다하여도 지속적인 수해우려가 확실시 되는 바, 추가시공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재발로 인한 2중의 예산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200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
서면답변 요구목록

확인읍·면	요 구 내 용	해 당 부 서	비 고
도암면	· 유천2리 석산개발 관련 주민 협약사항	임업경영과	
방림면	· 계촌복지회관 설계상 배치도 (집기류 등) · 읍·면복지회관 이용현황 (종류별 이용실적 구분)	환경복지과	
대화면	· 신2리 광산허가건 관련 피해저감대책	임업경영과	
미탄면	· 개발촉진지구별 예산배정내역 (인제, 평창)	건설과	
평창읍	· 교통소통대책 사업비에 관한 5개년계획	지역도시과	

2004년도상반기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지적사항처리계획

평 창 군

- 200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
지적사항 처리계획

1. 쓰레기매립장 운영현황 및 차기매립장 추진현황

《 차기쓰레기 매립장 추진사업과 관련 종합적인 대책 마련 》

- 차기 미란면 쓰레기 매립장사업은 현재 행정소송 중에 있는 상태로 행정소송 패소시를 대비한 대책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집행부는 아무런 대안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상태임.
차후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각종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2005년도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할 주민반발과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처리계획**

- 행정소송 판결의 결과에 관계없이 평창군에서는 사업추진을 강행할 계획이며 불가항력시 현재 존치중인 미란면 백운매립장을 활용할 계획임.

2. 유천2리 석산개발사업

《 주민집단민원 해소차원에서 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 요구 》

- 도양면 유천2리 석산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소음,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우려한 주변 주민들의(유천1.3리, 용산1리) 집단민원이 제기된 바, 군은 민원답변시 향후 주민협의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한다고 답하였으나 행정심판 재결후 허가단계 등 지금까지 주민들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행정과 주민간의 불화만 가중되어 사업추진을 더욱 어렵게 하는 양상이 있음.

향후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과의 협의가 어려운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바라며 이 사업으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마련을 강구하기 바람.

○ 처리계획

- 본 건은 산림법 제90조의2 제6항제3호 규정에 의거 당초 주민의 의견에 따라 채석허가신청 불허하였으나 강원도 행정심판에서 채석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이 있어 허가처리가 불가피하였으며, 주민의 의견수렴에 대한 규정은 산지관리법이 2003. 10. 01자로 시행되면서 삭제되어 사전 주민과 협의를 하지 못한 바 금후 작업과정에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채석과정에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 창리~평안간 무공해 반출도로공사

《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국비지원금 확보 노력 미흡 》

-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추진중인 창리~평안간 무공해 반출도로 공사 예산확보와 사업공정율을 살펴보면 총공사비 31억중 2004년도 예산액 5억을 포함한 확보액은 극히 미진한 상태로 공정을 또한 예산부족, 토지보상 미해결로 36%에 그치고 있음.

또한, 공사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 구간에 대한 사전 도로파손으로 주민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업지연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끊이지 않고있는 상태임.

따라서 국비 미확보 부분에 대하여는 조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집중적인 예산투자를 통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처리계획

- 건교부에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지만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사업비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므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구간부터 정비토록 할 계획이며, 개축지구 사업비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임.

4. 창리(릿별) 받기반정비사업

《 사용불가능한 농업용 암반관정 신속 복구 》

- 창리에 설치된 암반관정 4개중 1개가 사용불가능하고 군 전체적으로 볼 때 농업용 암반관정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설치후 지속적인 관리부족으로 인한 누수로 인하여 사용량에 비해 전기료가 과다하게 나오게 됨에 따라 당초 목적대로 사용이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해당부서에서는 전반적인 실태파악을 통하여 미사용관정에 대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처리계획

- 2004년 10월말까지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미사용 관정에 대하여는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우리군에서 조치해야할 사항에 대하여는 200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정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하며,
- 관정 유지관리 소홀 등의 부문에 대하여는 수리계 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주민들의 책임있는 관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

5. 전반적인 건설공사시 발생하는 민원해결 미흡

- 각종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회사의 성의없는 민원해결태도로 인하여 주민불만·분쟁의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도 민원문제 해결을 시공회사에만 맡기고 감독부서는 무관심한 경우가 비일비재함.
앞으로는 민원이 발생하면 감독부서가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바람.

○ 처리계획

-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명예 감독관을 위촉 및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중재하고 민원의 통로를 획일화하여 추진

6. 계촌5리 소교량 수해복구사업

《 수해방지를 위한 진입로 개선 및 날개벽 추가시공 》

- 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은 교량끝 날개벽 부분에 대하여 수해시 하천범람의 우려가 있어 설계변경을 통한 날개벽을 설치하고 이 시설물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재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시공 등 피해방지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 처리계획

-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본공사의 입찰잔액과 소교량 수해복구사업비 잔액을 사용하여 설계변경을 통한 교량끝 날개벽을 설치하고,
- 호우시 하천범람 등 수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추가시공 등 피해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를 변경 시행할 계획임.

- 200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
건의사항 처리계획

1. 진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 체육공원에 반드시 필요한 조깅코스, 화장실 등 추가 설치 》

- 진부체육공원조성사업에 있어 체육공원에 꼭 필요한 조깅코스가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체육공원으로써 제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고 화장실 또한, 넓은 면적에 비해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어 사용시 주민들의 불편이 확실시 되는 바, 주민육구 충족과 편의를 위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기 식수된 조경수가 외관상 조경수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바 지역의 특성과 체육공원의 이미지에 맞는 조경수로 교체해 줄 것을 바라며 체육기구 또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엔 종류와 수량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 체육기구를 더 설치해줄 것과 준공예정일이 얼마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 조속히 보완하기 바람.

○ **처리계획**

- 현재 단지내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보행로와 경용 활용을 유도하고 조깅 코스로 활용토록 실시 설계되어 있으며, 단지내에 조깅코스를 별도로 설치시 녹지면적이 40%에 미달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18조(용도구획계획)에 저촉되어 단지내 설치는 불가하며,
- 화장실은 당초 계단형 이동식화장실로 설계되어 현지 여건상 생활체육공원의 경관에 미흡하고 사용이 불편하여 외관이 수려하고 사용이 편리한 친환경적 형태의 쉐라시스템 우드빌화장실로 변경하여 단지내 2개소(체력단련장 1개동, 휴게공원 1개동)에 설치하였으며
- 조경공(식재)은 체육공원 전체면적에 대비 식재수량이 부족하므로 교목과 관목을 적정 장소에 추가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토록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임
- 또한, 체력단련기구는 당초 설계된 기구외에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몸통둘리기둥 3종을 추가 설치하여 다수의 인원이 사용토록 하겠음

2. 계촌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사업 《 부족예산 조속확보 및 공기내 준공 》

- 계촌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사업 준공예정일이 2004년 12월인 점을 감안 할 때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공사기간에 쫓겨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바라며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요구사항인 1,2층 화장실 및 2층 음식 승강장설치에 따른 예산확보가 1회추경에 반영되지 않아 차후 2회추경에는 반드시 예산에 반영하여 주민사용시 불편함이 없는 시설로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처리계획

- 현재 입찰공고중에 있으므로 사업착공 후 예정공정표에 따라 사업추진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 주민설명회시 요구 사항(면적증가, 승강기설치)에 대한 추가사업비 50백만원은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주민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복지회관 피로연장으로 준공하겠음.

3. 신2리 광산허가

《 원상복구를 전제로 한 허가 및 목적 외 사용 방지 철저 》

- 대화면 신2리 광산허가에 있어 사전협의를 통하여 사업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 및 연장신청에 있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명확한 행정처리를 바라며 규석채취 외에 타 광물(골재)이 유출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철저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반대하고 있는 인근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피해저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주민과 행정과의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바람.

○ 처리계획

- 수허가자는 2004. 4. 30일 수허가자와 인근 마을을 일으키는 주민 박에훈 외 6인과 각각 협의를 종료하고, 마을발전기금 2,000만원을 지불하는 등 분쟁의 소지를 해결한 상태이나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주민의 피해를 저감하고, 골재의 유출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하여 처리하겠음.

4. 면온리 산 355번지 펜션허가사업

《 무분별한 펜션난립 사전방지 》

- 면온리 산355번지 펜션허가사업은 200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시 불법토석채취 및 산림무단훼손 등으로 지적되었던 사업장으로써 무단산림훼손에 대하여는 단속되었지만 불법토석채취 부분에 대하여는 단속하지 않은 실정임.

향후 단속에 차등을 두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바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다 할지라도 주변상황을 파악하여 불허할 수 있는 부분은 불허하여 무분별한 펜션난립으로 인한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바람.

○ 처리계획

- 향후 펜션허가시 주변상황을 고려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무분별한 펜션난립이 되지 않도록 처리하겠으며,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5. 노동리 마을하수도 및 기반시설공사

《 혐오시설 이미지 탈피를 위한 친환경적 공간 마련 》

- 용평면 노동리에 설치되는 오수처리장이 기존 혐오시설이라는 편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환경친화적 공간(잔디공원, 꽃가꾸기, 쉼터등)을 조성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향후, 오수처리량의 증가로 인해 처리시설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처리장부지 미확보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부지를 확보하여 사업기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하기 바람.

○ 처리계획

- 노동리 마을하수도사업은 향후 오수처리량의 증가를 대비하여 100톤/㎡ 용량으로 실시 설계하여 추진중에 있음.
향후, 부지가 확보되는 즉시 공사 추진할 계획이며, 단지내 잔디공원과 쉼터 등을 조성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도 활용토록 하겠음.

6. 소도읍육성 지원사업

《 향동리 진입도로 공사구간 소교량 해결 》

- 평창읍 소도읍육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향동리 진입로 확장사업추진에 있어, 시공구간 끝나는 부분에 협소한 소교량이 위치하고 있으나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심한 선형굴곡과 협소함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교량 설계반영을 검토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주민통행과 농산물 반출차량 등 소통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처리계획

- 향동리 진입로 확장공사는 평창소도읍 종합육성계획에 의거 당초계획된 구간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 사업량 L=608m(B=10m), 사업비 10억원

건의된 소교량 가설은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으로 본 노선이 농어촌도로임을 감안하여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등 소교량 가설계획에 반영, 추진되도록 하겠음.

7. 용산1리 수해복구사업 《 미비점(계비온) 추가시공 》

- 도양면 용산1리 수해복구공사 구간중 60m 구간에 계비온이 설치되지 않아 금년도 복구를 한다 하여도 계속적인 수해 우려가 확실히 되는 바, 추가시공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에 재발로 인한 이종의 예산 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 처리계획

- 본 건은 수해복구공사로서 전체 160m를 계비온으로 설치하여야 하나 예산부족으로 당초 90m를 추진 중 예산 범위 내에서 24m를 추가 시공 중에 있으나 잔여 물량 46m에 대하여는 예산을 확보하여 처리 계획임.